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정재동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455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11. 15.

발 의 자 : 정재동 의원

찬 성 자 : 이인식, 도병두의원

1. 제안이유

금천구민이 관내 문화체육시설을 우선 신청·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, 사용료의 환급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여 문화체육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고 금천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금천구민이 문화체육시설을 우선 신청·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).

나. 사용료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(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).

다. 위탁관리에 관한 준용 조례를 규정함(안 제14조제2항).

라.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(안 제1조,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

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

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3. 11. 16. ~ 11. 22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금천구문화체육시설(이하 “문화체육시설”이라 한다)”을 “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문화체육시설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구청장은 구민을 우선하여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이전”을 “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1일 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(문화체육교실 수강료

의 경우 개강일 전날까지)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: 사용료 전액
환급

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”를
“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
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(이하 “문화체육시설” 이라 한다)</u>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문화체육시설“ 이라 함은 <u>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</u>을 말한다.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제4조(문화체육시설의 사용 등)</p> <p>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8조(사용료의 환급)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“문화체육시설” 이라 함은 <u>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</u>을 말한다.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문화체육시설의 사용 등)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<u>이 경우 구청장은 구민을 우선하여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사용료의 환급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
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
청을 한 경우 : 총 이용금액의
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

3.·4. (생략)

<신설>

제14조(위탁관리) ① (생략)

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
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
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 관
한 조례를 준용한다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
개시일 5일 전까지(문화체육
교실 수강료의 경우 개강일
전날까지) 사용취소 신청을
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급

3. -----
----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
1일 전-----

4.·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
같음)

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
환에 관한 사항은 「소비자기본
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에 의한
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
다.

제14조(위탁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 「서울특
별시금천구사무의 민간위탁에
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
금천구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
대행에 관한 조례」---

현행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
[시행 2021. 9. 29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196호, 2021. 9. 2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문화체육시설(이하 “문화체육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.

1. “문화체육시설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말한다. <개정2001.07.16, 2006.03.22>
2. “전용사용”이라 함은 문화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, “전용사용료”라 함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”라 함은 13세미만의 자 및 초등학생을,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 및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) 구청장은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4조(문화체육시설의 사용 등)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주민을 위한 구 단위 문화·체육행사 등과 중복될

경우 구 단위 행사 등을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문화체육교실을 개설·운영할 수 있으며,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25.>

제5조(사용시간 등) ①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주간 : 06:00 ~ 18:00

2. 야간 : 18:00 ~ 22:00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조(사용료의 징수)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공공체육시설의 최근 3년간 체육시설사용료의 변동추세

2.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

제7조(사용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9.7.19, 2020.7.17>

1. 국가, 서울특별시, 금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행사 및 경기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, 장애인,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, 청소년 또는 어린이,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자

<개정 2001.07.16, 2010.11.23, 2021.9.29.>

3. 지역문화 또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
4. 삭제 <2020.7.17>
5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할인한다. <신설 2020.9.18>
6. 기타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신설 2004.12.28> <개정 2020.9.18>
 - ②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 <신설 2021.9.29.>
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③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 <신설 2019.7.19>

제8조(사용료의 환급)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03.22>

1.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급 <개정 2006.03.22>

2.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: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<개정 2006.03.22, 2019.7.19>

3.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<개정 2006.03.22, 2019.7.19>

4. 잔디축구장 및 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 환급 <신설 2007.07.25> <개정 2021.9.29.>

가. 사용개시일 10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: 전액환급

나. 사용개시일 5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: 100분의 70 환급 <개정 2019.7.19>

다. 사용개시일 1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: 100분의 50 환급 <개정 2019.7.19>

제9조(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) ①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
2.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

②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시에는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자의 책임) 사용자가 사용도중에 시설물을 파손·분실 등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7.9>

제11조(부대설비 설치)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부대시설물 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부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12조(지도자 배치)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해 각 분야별로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.

제13조(시설물 관리)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,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위탁관리)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·관리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다.

부 칙 (제298호, 2000.12.26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330호, 2001.07.16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416호, 2004.12.28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454호, 2006.03.2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477호, 2006.12.29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500호, 2007.07.25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630호, 2010.11.23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037호, 2019.7.19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) 제7조제 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 (제1088호, 2020.3.25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100호, 2020.7.17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123호, 2020.9.18)(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171호, 2021.07.09) (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196호, 2021.9.29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8. 8.] [법률 제19592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»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□ 문화예술진흥법

[시행 2023. 8. 8.] [법률 제19592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소비자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23. 9. 22.] [대통령령 제33702호, 2023. 9. 12., 타법개정]

제8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)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

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.

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□ 소비자분쟁해결기준

[시행 2022. 12. 28.] [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-25호, 2022. 12. 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피해구제청구)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